

建設交通 常任委員會 會議結果報告

■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제2일차 건설교통위원회

□ 일 시 : 2013. 6. 15(금) 10:00 ~ 15:00

□ 안 건

1. 갈산1주택 재개발정비사업구역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개선 청원
2. 용현동 세진빌라 등 붕괴위험 대책 요청 청원
3. 계양 예비군 훈련장의 조속한 이전 추진 건의안
4. 인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용도지역:백운역세권 도시개발구역)
5. 2012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결산(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포함)
6. 2012회계연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세입·세출 결산

□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6名(이도형, 이재병, 정수영, 김병철, 이재호, 전원기 의원)
참석자 : 도시계획국장 외 30명
도시디자인추진단장 외 20명

□ 부의안건

1. 갈산1주택 재개발정비사업구역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개선 청원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함

○ 질의 및 답변

- 협의대상지에 대한 설명 요청(정수영 의원)
⇒ 30평 미만의 소규모 필지의 건축물들이며 정비구역에서 제외할 만한 필요성이 낮은 건축물들임.(강병수 의원)
- 협의대상지에 대한 시의 입장이 너무 소극적임.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이도형 의원)
⇒ 반대 민원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이 있음.
- 협의대상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전체 사업추진의 부진 및 사업성 저하를 야기하고 있음. 협의대상지 기준에 대하여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함.(강병수 의원)

2. 용현동 세진빌라 등 붕괴위험 대책 요청 청원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함

○ 질의 및 답변

- 재난관리기금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지?
(이도형 의원)
⇒ 그렇습니다.(소방안전본부장)

- 현실적으로 매입은 어려워, 주민·구·시 간의 사업비 분담을 통한 보수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선부른 청원채택은 무리가 있음.
(김병철 의원)
 - 구·시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검토해야 할 것.
(이재병 의원)
 - 시가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이재호 의원)
- ⇒ 더욱 노력하겠음.

3. 계양 예비군 훈련장의 조속한 이전 추진 건의안 ⇒ **부결**

○ 질의 및 답변

- 이전 시 이전비용과 이전 부지에 대한 검토는? (전원기 의원)
⇒ 경인여대와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도시계획국장)
⇒ 공촌동 등의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이용범 의원)
- 이전하였을 때 현재와 같이 주변에 소음 등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아니면 경감될 수 있는 것인지?(정수영 의원)
⇒ 현재는 이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그런 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님.(도시계획국장)
- 도심지내 일종의 혐오시설이 설치되는 것이므로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는 중요한 문제이고,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변 환경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정수영 의원)
⇒ 이전이 확정되어 추진 시에는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됨.
- 이전에 대한 합리성은 인정하나, 옮겨지는 부지의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선행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김병철 의원)

○ 토론요지

- 이전부지가 서구 공촌동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전되는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임. 이 건의안은 부결되어야 함.
(전원기 의원)
- 현 예비군 훈련장의 입지(도심지)와 경인여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사실을 감안했을 때 이전을 건의하는 데에는 찬성함.(정수영 의원)
- 표결에 부침
재석의원 5명 중 찬성 2(이도형, 정수영 의원), 반대 2(전원기, 김병철 의원), 기권 1(이재병 의원) → 부결

4. 인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용도지역:백운역세권 도시개발구역)

⇒ 원안가결

○ 질의 및 답변

- 민간공모자 지정 방식인데 현재의 건설경기를 고려할 때 가능하다고 보는지?(이재병 의원)

⇒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공모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 시 예산 약 170억 원을 투입해서 덮개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5. 2012회계년도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결산(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포함)

⇒ 원안가결

세입결산(일반+특별회계)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미수납액 ㉣-㉢	미수납액처리		
						결손	이월	
총 계		47,030,325,900	40,890,456,271	40,335,299,820	555,156,451	0	555,156,451	
일반회계	합 계	41,350,139,000	34,522,690,152	34,481,771,462	40,918,690	0	40,918,690	
	도시계획과	2,674,069,000	2,679,996,659	2,679,996,659	0	0	0	
	지역개발과	27,800,473,000	20,664,638,245	20,662,274,245	2,364,000	0	2,364,000	
	개발계획과	0	0	0	0	0	0	
	주거환경정책관	1,334,000,000	1,347,519,970	1,347,519,970	0	0	0	
	도시재생과	1,200,000,000	1,202,100,000	1,202,100,000	0	0	0	
	건축계획과	8,164,340,000	8,418,479,068	8,393,008,878	25,470,190	0	25,470,190	
	토지정보과	177,257,000	209,956,210	196,871,710	13,084,500	0	13,084,500	
특별회계	합 계	5,680,186,900	6,367,766,119	5,853,528,358	514,237,761	0	514,237,761	
	기타	도시개발	2,895,941,100	3,525,004,972	3,071,630,658	453,374,314	0	453,374,3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24,699,800	722,561,719	722,561,719	0	0	0
		기반시설	2,059,546,000	2,120,199,428	2,059,335,981	60,863,447	0	60,863,447

세출결산(일반+특별회계)

(단위:원)

구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 ㉡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총계	84,092,087,000	52,268,515,939	136,360,602,939	129,478,204,106	103,387,533,946	26,532,581,890	6,440,487,103
일반회계	합계	79,383,942,000	51,296,474,039	130,680,416,039	128,439,915,936	102,475,197,776	1,798,588,373
	도시계획과	5,321,626,000	391,511,770	5,713,137,770	5,428,033,580	5,318,283,080	185,104,190
	지역개발과	38,734,330,000	48,440,517,180	87,174,847,180	85,680,322,450	60,402,164,040	1,158,183,000
	개발계획과	51,660,000	53,723,000	105,383,000	102,156,140	102,156,140	3,226,860
	주거환경정책관	5,431,018,000	10,381,000	5,441,399,000	5,420,692,770	5,420,692,770	20,706,230
	도시재생과	6,112,438,000	2,400,341,089	8,512,779,089	8,089,512,570	7,591,703,320	417,696,519
	건축계획과	21,624,429,000	0	21,624,429,000	21,624,426,000	21,624,426,000	3,000
토지정보과	2,108,441,000	0	2,108,441,000	2,094,772,426	2,015,772,426	13,668,574	
특별회계	합계	4,708,145,000	972,041,900	5,680,186,900	1,038,288,170	912,336,170	4,641,898,730
	기타	2,307,005,000	588,936,100	2,895,941,100	597,128,100	471,176,100	2,298,813,000
	도시개발	341,594,000	383,105,800	724,699,800	214,654,840	214,654,840	510,044,96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2,059,546,000	0	2,059,546,000	226,505,230	226,505,230	1,833,040,770

○ 질의 및 답변

- 시비 256억 원의 이월사유와 조속한 개통요구?(전원기 의원)
- ⇒ 착공이 늦어진 면이 있으나, 금년 12월내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6. 2012회계연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세입·세출결산 ⇒ 원안가결

세입결산(일반회계)

(단위:원)

구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미수납액 ㉣=㉡-㉢	미수납액처리	
					결손	이월
총계	454,494,000	455,320,375	455,320,375	0		
일반회계	합계	454,494,000	455,320,375	455,320,375	0	
	도시디자인 추진단	454,494,000	455,320,375	455,320,375	0	

세출결산(일반회계)

(단위:원)

구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 ㉡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다음년도 이월액 ㉥	불용액 ㉦=㉤-㉥
총계	2,455,230,000		2,455,230,000	2,451,058,530	2,451,058,530		4,171,470
일반회계	합계	2,455,230,000	2,455,230,000	2,451,058,530	2,451,058,530		4,171,470
	도시디자인 추진단	2,455,230,000		2,455,230,000	2,451,058,530	2,451,058,530	4,171,470

○ 질의 및 답변

- 세출예산이 24억 밖에 안되는데 좀더 예산을 확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전원기 의원)

⇒ 내년도에는 아시안게임대비 예산을 많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비 고
2013. 6. 17(월)	3	1.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도시관리계획(철도, 공원, 녹지) 입안·결정안 4.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예비비지출 포함)	건설교통국

보고자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